



보도시점 2026. 4. 16.(목) 12:00 / 배포 2026. 4.16.(목) 08:30
< 4. 17.(금) 조간 >

전남 2개 육류도축업자의 흑염소 도축비 담합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한 전남지역 2개 육류 도축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 합의 배경

- 2개 육류 도축업자들은 물가상승으로 흑염소 도축장의 시설유지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고 도축장 운영 수익이 점차 악화되자, 도축비를 안정적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도축비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2 합의 · 실행 내용

- (1차 합의) 2개 육류 도축업자는 2024. 5. 20. 다음 <표 1>과 같이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10,000원 또는 5,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24. 7.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가축을 도축한 뒤 가죽, 내장, 머리, 발 등을 제거하고 남은 몸통의 무게를 말함

<표 1>

도축비 인상 1차 합의

| 도체 및 지육량 | 기존 금액 | 합의 금액 | 인상 폭(기존금액 대비) |
|-----------------|---------|---------|----------------|
| 15kg 미만 | 35,000원 | 45,000원 | 10,000원(28.6%) |
| 15kg 이상 45kg 미만 | 45,000원 | 55,000원 | 10,000원(22.2%) |
| 45kg 이상 60kg 미만 | 55,000원 | 60,000원 | 5,000원(9.1%) |

○ 그러나, 농가, 유통업자들이 도축비 인상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우려로 2개 육류 도축업자는 각자 도축비를 다르게 받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었다.

□ (2차 합의 및 시행) 2개 육류 도축업자는 2024. 6. 17. <표 2>와 같이 가온축산만 1차 합의 금액에서 구간별로 200원씩 인하하여 가격을 각자 다르게 받는 외형을 취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2024. 7. 1.부터 시행하였다.

<표 2> 도축비 인상 2차 합의

| 도체 및 지육량 | 1차 합의 금액 (5.20.) | 2차 합의 금액 (6.17.) | 1차 합의 금액과의 차이 |
|-----------------|---------------------|---------------------|------------------|
| 15kg 미만 | 45,000원 | 44,800원(가온) | △200원 |
| | | 45,000원(녹색) | - |
| 15kg 이상 45kg 미만 | 55,000원 | 54,800원(가온) | △200원 |
| | | 55,000원(녹색) | - |
| 45kg 이상 60kg 미만 | 60,000원 | 59,800원(가온) | △200원 |
| | | 60,000원(녹색) | - |

□ (합의 파기) 비록 2개 육류 도축업자의 구간별 도축비가 소폭 달라졌음에도 유통업자 등 도축장 이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녹색흑염소는 합의를 파기하기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2024. 8. 1.부터 5,000원 인하한 도축비를 받기 시작했다.

<표 3> 기존 합의 금액 및 녹색흑염소의 독자 결정 가격 비교

| 도체 및 지육량 | 기존 가격 | 1차 합의 금액 (5.20.) | 2차 합의 금액 (6.17.) | 녹색흑염소의 독자 가격 결정 이후의 금액 |
|-------------|---------|---------------------|---------------------|---------------------------|
| 15kg 미만 | 35,000원 | 45,000원 | 44,800원(가온) | 44,800원(가온) |
| | | | 45,000원(녹색) | 40,000원(녹색) |
| 15kg ~ 45kg | 45,000원 | 55,000원 | 54,800원(가온) | 54,800원(가온) |
| | | | 55,000원(녹색) | 50,000원(녹색) |
| 45kg ~ 60kg | 55,000원 | 60,000원 | 59,800원(가온) | 59,800원(가온) |
| | | | 60,000원(녹색) | 55,000원(녹색) |

3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2.~9. (생략)

□ 2개 육류 도축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가온축산 7백만 원, 녹색흑염소 5백만 원)을 부과했다.

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사건은 흑염소 가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하여 사육 농가 및 유통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흑염소 육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담합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의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

1. 2개 육류 도축업자 현황 및 과징금액
2. 도축업 시장구조 및 실태

| | | | | |
|-------|--------------------|-----|-----|--------------------|
| 담당 부서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 책임자 | 소 장 | 김현철 (062-975-6801) |
| | | 담당자 | 과 장 | 임수환 (062-975-6810) |
| | | | 조사관 | 김미영 (062-975-6811) |



참고 1

2개 육류 도축업자 현황 및 과징금액

(단위: 백만 원)

| 연번 | 사업자명(소재지) | 2024년도 재무현황 | | 과징금부과액 |
|----|---------------|-------------|------|--------|
| | | 매출액 | 영업이익 | |
| ① | 가온축산(전남 강진군) | 5,446 | 139 | 7 |
| ② | 녹색흑염소(전남 화순군) | 11,637 | 131 | 5 |

참고 2

도축업 시장구조 및 실태

□ 도축업의 정의 및 분류

도축업은 가축을 식품, 의약품 또는 기타 산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가공하는 사업으로, 도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제1항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축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도축업자가 제공하는 도축 서비스의 소비자인 도축장 사용자는 도축 의뢰 주체와 유통 구조에 따라 ‘이용 도축’ 과 ‘자가 도축’ 으로 구분된다.

‘이용 도축’ 은 가축 사육업자 및 유통업자 등 외부 사용자가 도축장에 도축비를 지급하고 가축을 도축장에 의뢰하여 도축하는 방식으로, 도축이 완료된 후 생산품을 사용자가 직접 유통 및 판매한다.

반면, ‘자가 도축’ 은 도축장 운영 사업자가 가축을 직접 매입하여 도축 후, 생산품을 스스로 유통 및 판매하는 방식이다.

□ 시·도별 흑염소 사육 현황

2022년 말 기준 국내 지역별 사육 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으며, 이 건 2개 육류 도축업자가 소재한 전남은 흑염소 사육 가구수 기준으로 전국 3위이고, 사육 두수 기준으로 전국 1위이다.

<표 1>

국내 시도별 흑염소 사육 현황

(기준: 2022. 12. 31. 기준)

| 지역 | 사육 가구수 | 사육 두수 | 가구당 사육 두수 |
|----|--------|---------|-----------|
| 서울 | 0 | 0 | 0 |
| 부산 | 29 | 1,095 | 38 |
| 대구 | 79 | 1,728 | 22 |
| 인천 | 125 | 2,354 | 19 |
| 광주 | 10 | 746 | 75 |
| 대전 | 15 | 571 | 38 |
| 울산 | 160 | 4,349 | 27 |
| 세종 | 19 | 1,154 | 61 |
| 경기 | 560 | 21,113 | 38 |
| 강원 | 644 | 20,416 | 32 |
| 충북 | 1,290 | 67,818 | 53 |
| 충남 | 1,817 | 47,328 | 26 |
| 전북 | 1,032 | 73,958 | 72 |
| 전남 | 1,487 | 103,792 | 70 |
| 경북 | 1,005 | 36,553 | 36 |
| 경남 | 1,951 | 36,731 | 19 |
| 제주 | 40 | 3,724 | 93 |
| 총계 | 10,263 | 423,430 | 41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기타 가축 통계

□ 전국 흑염소 도축장 및 도축실적

흑염소 도축장과 사육장 간의 거리는 도축장 사용자에게 도축장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장거리 이동시 품질 저하 및 폐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육장 인근에서 도축할 경우 운송 거리 및 비용을 줄이고 도축 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등 농가의 출하 편의성에 여러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리 도축장 이용의 이점으로 도축 서비스 수요자인 사육업자 및 유통업자는 사육장과 근거리에 있는 도축업자가 도축비를 인상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도축장을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흑염소 전용 도축장은 아래 <표 2>와 같이 10개소가 있다.

<표 2> 전국 흑염소 도축장 및 도축실적

| 지역 | 도축장 수 | 도축 실적 | | | | | |
|----|-------|---------|-----|---------|-----|---------|-----|
| |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 | | 도축두수 | 점유율 | 도축두수 | 점유율 | 도축두수 | 점유율 |
| 전남 | 2 | 42,673 | 34 | 42,307 | 36 | 42,548 | 37 |
| 강원 | 2 | 81,041 | 66 | 75,621 | 64 | 71,573 | 63 |
| 충북 | 3 | | | | | | |
| 충남 | 1 | | | | | | |
| 경북 | 1 | | | | | | |
| 경남 | 1 | | | | | | |
| 합계 | 10 | 123,714 | 100 | 117,928 | 100 | 114,121 | 100 |

* 출처: 전남도청 축산정책과